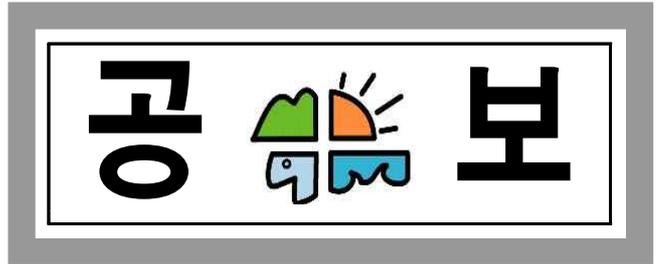


#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343호 2021년 8월 27일(금)

## 고 시

- 속초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설악2유원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2
- 속초 도시관리계획(중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6

## 공 고

-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한 모집 공고 ..... 10
- 휴 썸지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 12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감시카메라(클린지킴이) 설치 행정예고 ... 13

## 입법예고

- 속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6
- 속초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30

**속초시 고시 제2021-105호**

**속초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설악2유원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속초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설악2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8월 27일

속 초 시 장

가.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조서 : 아래조서 참조

나.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공간시설(유원지)

■ 유원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7	설악2유원지	유원지	설악동 705-54 일원	807,492	강고 제2013-143호 (2013. 4. 26)	변경 없음

나. 설악2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세부시설 결정(변경) 총괄표

구 분				시 설 면 적 (m <sup>2</sup> )						구 성 비 (%)	
				바닥면적			지상연면적			부지면적	지상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807,492	-	807,492	146,800	증 500	147,300	544,700	증 2,900	547,600	100.0	100.0
유희시설	28,160	증 538	28,698	8,300	-	8,300	27,000	감 900	26,100	3.6	4.8
운동시설	43,802	감 384	43,418	11,500	-	11,500	37,200	-	37,200	5.4	6.8
휴양시설	193,899	증 37,029	230,928	57,700	증 10,800	68,500	251,200	증 36,900	288,100	28.6	52.6
특수시설	144,657	증 2,425	147,082	38,500	증 700	39,200	124,800	증 3,900	128,700	18.2	23.5
편익시설	94,366	감 37,029	57,337	27,100	감 10,900	16,200	93,500	감 36,900	56,600	7.1	10.3
관리시설	96,414	증 8,157	104,571	3,100	-	3,100	10,400	-	10,400	12.9	1.9
기타시설	206,194	감 10,736	195,458	600	감 100	500	600	감 100	500	24.2	0.1

2) 세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변경사유
7	설악2 유원지	◦ 기존 결정된 유원지 세부 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 편익시설지 일부 조정으로 휴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

3)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

시설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규모(㎡)						층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바닥면적(㎡)			지상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b>총 계</b>			<b>807,492</b>	<b>-</b>	<b>807,492</b>	<b>146,800</b>	<b>증 500</b>	<b>147,300</b>	<b>544,700</b>	<b>증 2,900</b>	<b>547,600</b>	<b>-</b>	<b>-</b>	
<b>유희시설</b>			<b>28,160</b>	<b>증 538</b>	<b>28,698</b>	<b>8,300</b>	<b>-</b>	<b>8,300</b>	<b>27,000</b>	<b>감 900</b>	<b>26,100</b>	<b>-</b>	<b>-</b>	
A-1	A-1	물고기놀이터 & 물놀이장	8,747	증 1,076	9,823	2,600	증 300	2,900	8,700	증 1,100	9,800	5	5	
A-2	A-2	설악산 VR영상관	7,428	감 2,125	5,303	2,200	감 700	1,500	7,400	감 2,100	5,300	5	5	
A-3	-	VR 트램핑류장 1	780	감 780	-	200	감 200	-	700	감 700	-	5	-	폐지
-	A-3	유희시설 1	-	증 874	874	-	증 200	200	-	증 800	800	-	5	신설
A-4	-	VR 트램핑류장 2	1,812	감 1,812	-	500	감 500	-	900	감 900	-	5	-	폐지
-	A-4	유희시설 2	-	증 4,840	4,840	-	증 1,400	1,400	-	증 2,400	2,400	-	5	신설
A-5	-	Green Mall 1	9,393	감 9,393	-	2,800	감 2,800	-	9,300	감 9,300	-	5	-	폐지
-	A-5	유희시설 3	-	증 7,858	7,858	-	증 2,300	2,300	-	증 7,800	7,800	-	5	신설
<b>운동시설</b>			<b>43,802</b>	<b>감 384</b>	<b>43,418</b>	<b>11,500</b>	<b>-</b>	<b>11,500</b>	<b>37,200</b>	<b>-</b>	<b>37,200</b>	<b>-</b>	<b>-</b>	
B-1	B-1	다목적운동장 & 야외공연장	6,995	감 384	6,611	600	-	600	600	-	600	3	3	
B-2	B-2	연금공단(운동시설 1)	9,498	-	9,498	2,800	-	2,800	9,400	-	9,400	3	3	
B-3	B-3	연금공단(운동시설 2)	11,963	-	11,963	3,500	-	3,500	11,900	-	11,900	3	3	
B-4	B-4	연금공단(운동시설 3)	15,346	-	15,346	4,600	-	4,600	15,300	-	15,300	3	3	
<b>휴양시설</b>			<b>193,899</b>	<b>증 37,029</b>	<b>230,928</b>	<b>57,700</b>	<b>증 10,800</b>	<b>68,500</b>	<b>251,200</b>	<b>증 3,900</b>	<b>288,100</b>	<b>-</b>	<b>-</b>	
C-1	-	펜션단지 1	13,224	감 13,224	-	3,900	감 3,900	-	13,200	감 13,200	-	5	-	폐지
-	C-1	생활형숙박시설 1	-	증 13,224	13,224	-	증 3,900	3,900	-	증 13,200	13,200	-	5	신설
C-2	C-2	생활형숙박시설 2	18,114	-	18,114	5,400	-	5,400	27,100	-	27,100	15	15	
C-3	-	펜션단지 2	16,111	감 16,111	-	4,800	감 4,800	-	16,100	감 16,100	-	5	-	폐지
C-4	-	펜션단지 3	12,691	감 12,691	-	3,800	감 3,800	-	12,600	감 12,600	-	5	-	폐지
-	C-3	펜션단지 1	-	증 3,967	3,967	-	증 1,100	1,100	-	증 3,900	3,900	-	5	신설
-	C-4	펜션단지 2	-	증 7,107	7,107	-	증 2,100	2,100	-	증 7,100	7,100	-	5	신설
-	C-5	펜션단지 3	-	증 5,457	5,457	-	증 1,600	1,600	-	증 5,400	5,400	-	5	신설
-	C-6	펜션단지 4	-	증 9,919	9,919	-	증 2,900	2,900	-	증 9,900	9,900	-	5	신설
-	C-7	생활형숙박시설 3	-	증 38,720	38,720	-	증 11,600	11,600	-	증 38,700	38,700	-	5	신설
C-5	C-8	생활형숙박시설 4	15,003	증 4,832	19,835	4,500	증 1,400	5,900	22,500	증 7,200	29,700	18	18	보정
C-6	C-9	생활형숙박시설 5	29,739	감 4,832	24,907	8,900	증 1,500	7,400	44,600	감 7,300	37,300	18	18	보정
C-7	C-10	단독형 펜션	992	증 661	1,653	200	증 200	400	900	증 700	1,600	5	5	보정
C-8	C-11	생활형숙박시설 6	19,848	-	19,848	5,900	-	5,900	29,700	-	29,700	18	18	
C-9	C-12	생활형숙박시설 7	33,058	-	33,058	9,900	-	9,900	49,500	-	49,500	18	18	근린생활 시설(바닥면적 300㎡ 미만) 중축(지하부분)
C-10	C-13	연금공단(휴양시설 1)	16,536	-	16,536	4,900	-	4,900	16,500	-	16,500	5	5	
C-11	C-14	연금공단(휴양시설 2)	18,583	-	18,583	5,500	-	5,500	18,500	-	18,500	7	7	

시설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규모(㎡)						층수		비고
						바닥면적(㎡)			지상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b>특수시설</b>			<b>144,657</b>	<b>증 2,425</b>	<b>147,082</b>	<b>38,500</b>	<b>증 700</b>	<b>39,200</b>	<b>124,800</b>	<b>증 3,900</b>	<b>128,700</b>	-	-	
D-1	-	추양기념관/애국지사기념관	7,044	감 7,044	-	2,100	감 2,100	-	7,000	감 7,000	-	5	-	폐지
-	D-1	추양기념관/금강산기독교수양관	-	증 7,044	7,044	-	증 2,100	2,100	-	증 7,000	7,000	-	5	신설
D-2	D-2	3.1운동 기념박물관	2,781	감 1	2,780	800	-	800	2,700	-	2,700	5	5	보정
D-3	-	야외조각전시·관람장	16,206	감 16,206	-	4,800	감 4,800	-	16,200	감 16,200	-	5	-	폐지
-	D-3	체험의 숲 1	-	증 7,356	7,356	-	증 2,200	2,200	-	증 7,300	7,300	-	5	신설
D-4	-	체험의 숲 1	8,454	감 8,454	-	800	감 800	-	800	감 800	-	5	-	폐지
-	D-4	야외공원 / 야외음악당	-	증 6,611	6,611	-	증 600	600	-	증 600	600	-	5	신설
D-5	-	체험의 숲 2	12,769	감 12,769	-	1,200	감 1,200	-	1,200	감 1,200	-	5	-	폐지
-	D-5	자연휴식시설 1	-	증 3,729	3,729	-	증 1,100	1,100	-	증 3,700	3,700	-	5	신설
D-6	-	문화생태체험장	9,828	감 9,828	-	2,900	감 2,900	-	9,800	감 9,800	-	5	-	폐지
-	D-6	자연휴식시설 2	-	증 3,329	3,329	-	증 900	900	-	증 3,300	3,300	-	5	신설
-	D-7	자연휴식시설 3	-	증 2,623	2,623	-	증 700	700	-	증 2,600	2,600	-	5	신설
-	D-8	자연휴식시설 4	-	증 805	805	-	증 200	200	-	증 800	800	-	5	신설
-	D-9	자연휴식시설 5	-	증 791	791	-	증 200	200	-	증 700	700	-	5	신설
-	D-10	자연휴식시설 6	-	증 2,302	2,302	-	증 600	600	-	증 2,300	2,300	-	5	신설
-	D-11	자연휴식시설 7	-	증 3,770	3,770	-	증 1,100	1,100	-	증 3,700	3,700	-	5	신설
-	D-12	체험의 숲 2/야외조각 전시장	-	증 12,761	12,761	-	증 1,200	1,200	-	증 1,200	1,200	-	5	신설
-	D-13	체험의 숲 3	-	증 4,040	4,040	-	증 1,200	1,200	-	증 4,000	4,000	-	5	신설
-	D-14	자연휴식시설 8	-	증 4,105	4,105	-	증 1,200	1,200	-	증 4,100	4,100	-	5	신설
D-7	D-15	자연휴식시설 9	10,170	증 675	10,845	3,000	증 200	3,200	10,100	증 700	10,800	5	5	보정
D-8	D-16	미술관	14,203	-	14,203	4,200	-	4,200	14,200	-	14,200	5	5	
D-9	-	자연휴식시설 2	7,143	감 7,143	-	2,100	감 2,100	-	7,100	감 7,100	-	2	-	폐지
-	D-17	자연휴식시설 10	-	증 3,305	3,305	-	증 900	900	-	증 3,300	3,300	-	5	신설
-	D-18	자연휴식시설 11	-	증 2,857	2,857	-	증 800	800	-	증 2,800	2,800	-	5	신설
D-10	D-19	자연휴식시설 12	12,693	감 1,351	11,342	3,800	감 400	3,400	12,600	감 1,300	11,300	2	2	보정
D-11	D-20	자연휴식시설 13	5,996	감 882	5,114	1,700	감 200	1,500	5,900	감 800	5,100	2	2	보정
D-12	D-21	온천공	464	-	464	100	-	100	400	-	400	1	1	
D-13	D-22	다목적광장	20,044	-	20,044	6,000	-	6,000	20,000	-	20,000	3	3	
D-14	D-23	연금공단(특수시설)	16,862	-	16,862	5,000	-	5,000	16,800	-	16,800	3	3	
<b>편익시설</b>			<b>94,366</b>	<b>감 37,029</b>	<b>57,337</b>	<b>27,100</b>	<b>감 10,900</b>	<b>16,200</b>	<b>93,500</b>	<b>감 33,900</b>	<b>56,600</b>	-	-	
E-1	-	근린생활시설 1	6,642	감 6,642	-	1,900	감 1,900	-	6,600	감 6,600	-	5	-	폐지
-	E-1	근린생활시설 1	-	증 661	661	-	증 100	100	-	증 600	600	-	5	신설
E-2	E-2	음식점거리 1	4,079	감 3,418	661	1,200	감 1,100	100	4,000	감 3,400	600	5	5	보정
E-3	-	음식점거리 2	2,733	감 2,733	-	800	감 800	-	2,700	감 2,700	-	5	-	폐지
-	E-3	헬스케어센터/인삼스파	-	증 6,602	6,602	-	증 1,900	1,900	-	증 6,600	6,600	-	5	신설
E-4	-	음식점거리 3	3,034	감 3,034	-	900	감 900	-	3,000	감 3,000	-	5	-	폐지
E-5	-	헬스케어센터	10,273	감 10,273	-	3,000	감 3,000	-	10,200	감 10,200	-	5	-	폐지
E-6	-	인삼스파	5,349	감 5,349	-	1,600	감 1,600	-	5,300	감 5,300	-	5	-	폐지
E-7	E-4	근린생활시설 2	12,291	감 6,204	6,087	3,600	감 1,800	1,800	12,200	감 6,200	6,000	5	5	보정
E-8	E-5	근린생활시설 3	10,752	감 8,180	2,572	3,200	감 2,500	700	10,700	감 8,200	2,500	5	5	보정
E-9	E-6	근린생활시설 4	3,306	증 6,789	10,095	900	증 2,100	3,000	3,300	증 6,700	10,000	5	5	보정
E-10	-	근린생활시설 5	4,550	감 4,550	-	1,300	감 1,300	-	4,500	감 4,500	-	5	-	폐지
E-11	E-7	근린생활시설 5	1,986	감 2	1,984	500	-	500	1,900	-	1,900	5	5	보정
E-12	E-8	근린생활시설 6	7,934	-	7,934	2,300	-	2,300	7,900	-	7,900	5	5	
E-13	-	근린생활시설 8	3,988	감 3,988	-	1,000	감 1,000	-	3,900	감 3,900	-	5	-	폐지
-	E-9	근린생활시설 7	-	증 4,466	4,466	-	증 1,300	1,300	-	증 4,400	4,400	-	5	신설
E-14	E-10	근린생활시설 8	2,532	-	2,532	700	-	700	2,500	-	2,500	5	5	
E-15	E-11	근린생활시설 9	2,426	감 883	1,563	700	감 300	400	2,400	감 900	1,500	5	5	보정
E-16	E-12	근린생활시설 10	1,115	감 311	804	300	감 100	200	1,100	감 300	800	5	5	보정
E-17	E-13	근린생활시설 11	3,306	-	3,306	900	-	900	3,300	-	3,300	5	5	
E-18	E-14	근린생활시설 12	3,305	-	3,305	900	-	900	3,300	-	3,300	5	5	
E-19	E-15	연금공단(편익시설)	4,765	-	4,765	1,400	-	1,400	4,700	-	4,700	3	3	

시설번호		시 설 명	부지면적(㎡)			시설규모(㎡)						층수		비고
						바다면적(㎡)			지상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b>관리시설</b>			<b>96,414</b>	<b>증 8,157</b>	<b>104,571</b>	<b>3,100</b>	-	<b>3,100</b>	<b>10,400</b>	-	<b>10,400</b>	-	-	
F-1	F-1	도 로	40,528	증 12,094	52,622	-	-	-	-	-	-	-	-	도로증가
F-2	F-2	공공주차장 1	2,296	감 12	2,284	-	-	-	-	-	-	-	-	보정
F-3	F-3	공공주차장 2	1,660	감 18	1,642	-	-	-	-	-	-	-	-	보정
F-4	F-4	공공주차장 3	10,032	감 3,910	6,122	-	-	-	-	-	-	-	-	보정
F-5	F-5	환승센터	3,719	증 5	3,724	1,100	-	1,100	3,700	-	3,700	5	5	보정
F-6	F-6	관광지원안내소	6,766	감 2	6,764	2,000	-	2,000	6,700	-	6,700	5	5	보정
F-7	F-7	연금공단(관리시설)	31,413	-	31,413	-	-	-	-	-	-	-	-	
<b>기타시설</b>			<b>206,194</b>	<b>감 10,736</b>	<b>195,458</b>	<b>600</b>	<b>감 100</b>	<b>500</b>	<b>600</b>	<b>감 100</b>	<b>500</b>	-	-	
G-11	G-11	기타시설 1 (30m 녹지 1)	14,328	감 4	14,324	-	-	-	-	-	-	-	-	보정
G-12	G-12	기타시설 1 (30m 녹지 2)	41,724	감 5,782	35,942	-	-	-	-	-	-	-	-	보정
G-2	G-2	기타시설 2(메모리얼파크)	6,210	감 275	5,935	600	감 100	500	600	감 100	500	3	3	보정
G-31	G-31	기타시설 3(사유지 1)	43,648	감 3,120	40,528	-	-	-	-	-	-	-	-	보정
G-32	G-32	기타시설 3(사유지 2)	15,592	감 962	14,630	-	-	-	-	-	-	-	-	보정
G-33	G-33	기타시설 3(사유지 3)	16,359	감 486	15,873	-	-	-	-	-	-	-	-	보정
G-34	G-34	기타시설 3(사유지 4)	574	증 2	576	-	-	-	-	-	-	-	-	보정
G-35	G-35	기타시설 3(사유지 5)	25	증 1	26	-	-	-	-	-	-	-	-	보정
G-36	G-36	기타시설 3(사유지 6)	32,556	-	32,556	-	-	-	-	-	-	-	-	
G-41	G-41	연금공단 (기타시설 1)	9,508	-	9,508	-	-	-	-	-	-	-	-	
G-42	G-42	연금공단 (기타시설 2)	25,670	-	25,670	-	-	-	-	-	-	-	-	

**속초시 고시 제2021-106호**

**속초 도시관리계획(중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속초 도시관리계획(중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8월 27일

속 초 시 장

1.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38	중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468-19번지 일원	4,924	증) 29	4,953	2018. 5. 1. (속고제2018-37호)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변경	38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468-19번지 일원	4,953	◦ 지적 경계측량에 따른 면적정정 및 분할 예비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을 정정하기 위함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4,953	-	4,953	100.0	
일반상업지역	4,953	-	4,953	100.0	

2) 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중심시가지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중앙동 471-4대	487,709 (4,953)	-	300~400	2007. 11. 2. (강고제2007-236호)	

※ ( )는 구역내 면적임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총괄표

구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계	3	3,058 (147)	59,223 (507)	-	-	-	-	-	-	-	-	-
중로	1	2,941 (32)	58,220 (60)	1	2,941 (32)	58,220 (60)	-	-	-	-	-	-
소로	2	117 (115)	1003 (447)	1	74 (72)	740 (184)	-	-	-	1	43 (43)	263 (263)

※ ( )는 구역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3	20~22	보조 간선 도로	2,941 (32)	광3-1 교동671-2도	대3-4 영랑131-5도	일반 도로	속초 시청	1969. 3. 25 (강고제69-2119호)	
변경	중로	1	3	20~22	보조 간선 도로	2,941 (32)	광3-1 교동671-2도	대3-4 영랑131-5도	일반 도로	속초 시청	1969. 3. 25 (강고제69-2119호)	
기정	소로	1	93	10~11	국지 도로	74 (72)	중1-3 중앙468-121도	중1-10 중앙468-121도	일반 도로		1977. 4. 19. (강고제77-72호)	
변경	소로	1	93	10~11	국지 도로	74 (72)	중1-3 중앙468-121도	중1-10 중앙468-121도	일반 도로		1977. 4. 19. (강고제77-72호)	
기정	소로	3	332	6.5	국지 도로	43 (43)	중앙468-186잡	소1-93 중앙468-120대	일반 도로		2018. 5. 1. (속고제2018-37호)	
변경	소로	3	332	6.5	국지 도로	43 (43)	중앙468-186잡	소1-93 중앙468-120대	일반 도로		2018. 5. 1. (속고제2018-37호)	

※ ( )는 구역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3	중로1-3	◦ 선형변경	◦ 분할 예비측량 결과에 따른 선형 조정
소로1-93	소로1-93	◦ 선형변경	◦ 분할 예비측량 결과에 따른 선형 조정
소로3-332	소로3-332	◦ 선형변경	◦ 분할 예비측량 결과에 따른 선형 조정

나) 공간시설

▣ 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2	공공공지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468-186번지 일원	91	증) 1	92	2018. 5. 1. (속고제2018-37호)	

▣ 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2	공공공지	◦ 변경	◦ 분할 예비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

가구번호	획 지		면 적(m <sup>2</sup> )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328	증) 26	4,354	
A	A-1	속초시 중앙동 468-19번지 일원	4,328	증) 26	4,354	주상복합용지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결 정 내 용
-	A-1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별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호의 공동주택</li> <li>-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li> <li>-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li> <li>-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에 한함)</li> </ul> </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880% 이하
		높 이	◦ 36층 이하
		배 치	◦ 동해 조망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배치 ◦ 건물의 형태와 배치 등을 변화있게 하여 단조로운 경관탈피
		형 태	◦ 경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건축물의 옥탑층, 주현관, 지붕의 형태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 주민에게 안정감과 리듬감을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 연출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1.0m : 인접대지경계 ◦ 건축한계선 2.0m : 도로변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단지내 조경	◦ 「건축법」 및 「속초시 건축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 조성	
차량출입 허용구간	◦ 결정도에 차량출입 허용구간으로 표현된 부분에 한하여 차량출입을 허용 ◦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구간을 지정하여 차량 진출입구 설치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법」 및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 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	

2.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도면 : 실음생략

● **속초시 공고 제2021-895호**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한 모집 공고**

속초시에서 인·허가(발주)된 건축공사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속초시장**

1. 공고명 :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한 모집 공고
2. 안전점검 수행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3. 참가자격(모두 해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 등록된 업체)
  - 강원도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개인사업자는 관련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
4. 모집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1. 8. 24.(화) 09:00 ~ 2021. 9. 14.(화) 18:00 (22일간)
  - 제출장소 : 강원도 속초시청 도시안전국 건축과(2층) (☎033-639-2769)
  - 등록명부 공고 : 2021. 9. 17.(금) (속초시청 홈페이지 sokcho.go.kr - 고시공고)
    - ※ 공고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 건축과 방문접수(대리 접수 시 위임장 및 신청자 신분증 첨부)
    - 우편(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 [jh1029@korea.kr](mailto:jh1029@korea.kr)
      -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바랍니다.
      - \* 이메일 접수 시 접수결과를 필히 확인하고 접수결과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붙임 1)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붙임 2)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부
    -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시 USB 1개.(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동일한 PDF파일 포함)

## 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되고 지정결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모집기간 및 방법수행기관 모집공고에 응모한 업체가 2개사 이상 일 경우 지정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등록명부에 지정(작성)하며, 1개사 이하일 경우 재공고 시행합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의 유효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 등록명부는 속초시 인·허가부서 및 사업부서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시 활용·적용 될 수 있습니다.
- 시공자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세부평가기준 등을 공고하여 평가 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도시안전국 건축과(☎033-639-2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끝.

## 휴 썸지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속초시 설악동 집단지구(C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8. 27.

## 속 초 시 장

### 1.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	⑫	휴 썸지공원	문화공원	속초시 설악동 246-91번지 일원	1,631	-	1,631	도시지역 온천원 보호 지구	

### 2. 공원조성계획 결정 사유

- 속초시 설악동 집단지구(C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문화공원 부지로 결정된바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게 공간 및 여가활용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3. 공람기간 및 주민의견 제출 안내

- 공람(의견제출)기간 : 2021. 08. 27.(신문게재일) ~ 09. 09.(14일간)
- 공람(의견제출)장소 : 속초시 공원녹지과 공원행정팀
- 관계도서 : 공원조성계획 1부.(공람장소 비치)
-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E-mail([3leder@korea.kr](mailto:3leder@korea.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공원녹지과(☎033-639-280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공고 제2021 - 912호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감시카메라(클린지킴이) 설치 행 정 예 고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클린지킴이(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5일

### 속 초 시 장

1. 설치목적 :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지역 사전 예방·계도 및 단속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 기간 : 2021. 8. 25. ~ 2021. 9. 14.(20일간)
4. 공고방법 : 강원도 속초시청 홈페이지(<http://www.sokcho.go.kr>)
5. 설치대수 : 5대(이동식 5)
6. 촬영범위 및 시간 : 반경 20m 및 24시간 연속촬영
7. 설치지역 : 속초시 관내 상습무단투기 지역

**【 고정식 】**

가. 설치대수 : 5대

나. 설치장소

행 정 동	대 수	소 재 지	비 고
합 계	5		
동명동	1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513-157	
조양동	2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482-1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512-14	
청호동	1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550-17	

**【 이동식 】**

가. 설치대수 : 5대

나. 설치장소 : 속초지 전지역(쓰레기 상습 불법투기지역)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속초시청(환경위생과)으로 2021. 9. 1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33-639-2386)

라. 보내실 곳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환경위생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속초시청 환경위생과(033-639-2337)

# 의 견 제 출 서

행정예고명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용 클린지킴(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지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용 클린지킴이(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 속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일

##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실질적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위해 동에 설치하는 속초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활성화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속초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주민자치회의 목적, 정의, 운영원칙, 설치, 기능(안 제1조 ~ 제5조)
- 나.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 제15조)
- 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안 제16조 ~ 안 제20조)
- 라.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안 제21조 ~ 안 제22조)

마. 감독, 보험, 운영세칙(안 제23조 ~ 제25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9.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  
(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 연 락 처 : 033-639-2136 (FAX 033-639-2590)
- 전자메일 : kamja@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033-639-2136)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시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경우 전체 위원수의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당해 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 한다.

③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에는 40대 이하가 1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⑧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⑩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⑪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

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충분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및 사전투표 진행 시, 참석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⑨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6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 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

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⑧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5장 보 칙

**제23조(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4조(보험)**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는 중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

속초시의회 공고 제2021-28호

「속초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 속초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1. 8. 23. ~ 2021. 8. 28.(6일간)

####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8월 2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김명길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김명길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소 :

○ 연락처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기타 참고사항

○

# 속초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1. 8. .

발 의 자 : 김명길 의원 외 인

## 1.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취약계층 빈곤문제 해결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책무 (안 제1조 ~ 제2조)
- 나. 자활지원계획 수립 (안 제3조)
- 다. 자활사업 지원 (안 제4조)
- 라. 자활기관협의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제17조, 제28조
- 나. 기 타
  - 1) 집행부 의견청취
  - 2) 조례안 예고
  -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속초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속초시 취약계층의 자활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속초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 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자활사업 지원)** 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 자활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비용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
4.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위탁

②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용자
2. 국·공유지 우선 임대
3.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③ 시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상시노동자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방법 및 조건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자활기관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 법 제17조 및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속초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임기 및 직무)**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대표자 회의)** ① 협의체 대표자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표자 회의의 주요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인원 등 보고
2.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및 당해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관련 사항
3. 각 기관의 사업 중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
4.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5.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거나 위원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7. 협의체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제8조(실무자 회의)** ① 협의체 실무자 정기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실무자 회의의 주요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년도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의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 사전·사후관리 방안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상황 점검
5. 신규 자활대상자에 대한 개인 및 가구특성, 상담이력, 프로그램 결정 등 공유
6. 프로그램 부적응자, 상담 불응자 등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개선방안 협의
7.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무작업 추진
8. 자활사업 추진경과 및 문제점 점검
9. 각 기관의 분기별 사업계획(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 조정 등)

제9조(수당 등)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자활사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활기관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여건 변화와 급여 실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